

1995. 8.

光州廣域市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西 區 議 會 運 營 委 員 會

光州廣域市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5年 8月
西 區 議 會

1. 審査經過

- 가. 發議日字 : 1995年 8月 24日
- 나. 發 議 者 : 姜熙烈 議員 外 4人
- 다. 回附日字 : 1995年 8月 24日
- 라. 最初上程日字 : 1995年 8月 24日
- 마. 開催回數및日數 : 1回 (95年 8月 24日)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事由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改正 主要骨子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월 35만원으로 하도록 함.

○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지급하던 현지교통비, 식비를 삭제함.

○ 의원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李 學 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으로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지급

—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서구지방공무원 보수일에 지급

— 여비 지급에 있어서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지급하던 현지교통비등을 지급하지 않음.

○ 상위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4. 質疑 및 答辯要旨書 : 생 략

5. 檢討 要旨 : 없 음

6. 審査 結果 :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7. 少數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事項 : 없 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및여비”를 “의정활동비등”으로 한다.

제1조중 “일비와”를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제3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으로 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서구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 및 제6조 제목 및 조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3조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한다.

제8조중 “일비와 여비의”를 “여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u>일비와 여비</u> 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u>의정활동비와</u>
		-----		<u>회의수당 및</u> -----
		-----		.
<u><신 설></u>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0,000원		
		으로 한다.		
		②의정활동비는 서구지방공무원의 보		
		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 (일비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		제3조 (회의수당 지급) ①-----		
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		-----		<u>회의</u>
를 지급한다.		수당을 -----		
②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		②회의수당은 -----		
한다.		-----		
제3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		제4조 (출석일수 계산) -----		
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		-----		
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		-----		
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		-----		
의 경우에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		-----		<u>제3조</u> -----
로 본다.		-----		.

현행	개정안
제4조 (여비 지급) <u>의원이 국회의 회의</u> (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 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 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 다.	제5조 (여비 지급) <u>의원이 본회의 또는</u> <u>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u> <u>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u> <u>지급한다.</u>
제5조 (여비의 종류) ①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 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 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의 종류) ① <u>국내여행을 할</u> <u>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u> <u>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u> <u>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u> <u>분한다.</u>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6조 (일비 지급기준) <u>의원에게</u> <u>지급</u> <u>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u> <u>원으로 한다.</u>	제7조 (일비 지급기준) <u>의원에게</u> <u>지급</u> <u>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u> <u>원으로 한다.</u>
제7조 (여비 지급기준) ①<생략>	제8조 (여비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u>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u> <u>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의</u> <u>예에 따른다.</u>	제9조 (준용) ----- ----- <u>여비</u> ----- ----- -----